제 224 호

1972. 4. 22

등록번호 : 제39호
등록년월일 : 1953년6열18일
발 행 인 : 서울특별시장 양 택 식
편 집 인 : 공보실장 손 완 수
인 쇄 : 서울특별시 중앙인쇄실

이 영구보존문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였음.
1977. 3. 1.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시 보

## 차 례

조 례 ..... 1
고 시 ..... 5

1. 시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시 보 세 분 목 차


1. 조 례 ..... 1

제 702 호 서울특별시립 위생연구소 제수수료 징수조례 ..... 1

제 703 호 도시개발의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 3

2. 고 시 ..... 5

제 43 호 도시계획 소로 일부변경 ..... 5

제 48 호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 5

제 51 호 도시계획 소로 신설 ..... 6

##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택 식

1972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제702호

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

제 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위생연구소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과 소분봉함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2조 전조의 수수료는 별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조 ①검사, 시험, 분석, 감정과 소분봉함을 의뢰하고저 하는 자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증지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써 납부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를 취소하더라도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공서 또는 특별히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18호 서울특별시위생시험소제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 표

| 종 별 | | | 건 수 | 공시품분량 | 수수료 |
|---|---|---|---|---|---|
| 의약품 및 화공품검사 | 약 품 | 약전적합(생물학적시험은 별도) | 1건 | 소장이 별도로 정함 | 2,000 |
| | | 비타민류-성분정성 | 〃 | 〃 | 200 |
| | | 비타민류-성분정량 | 〃 | 〃 | 600 |
| | | 일성분의 정성분석 | 〃 | 〃 | 200 |
| | | 일성분의 정량분석 | 〃 | 〃 | 500 |
| | | 항생물질 역기 시험 | 〃 | 〃 | 500 |
| | | 발효성물질 시험 | 〃 | 〃 | 1,000 |
| | | 멸균도 시험 | 〃 | 〃 | 500 |
| | | 화공약농약의 품질검사 | 〃 | 〃 | 2,000 |

0865

| 종 | 별 | | 건수 | 공시품분량 | 수수료 |
|---|---|---|---|---|---|
| | 화장품 | 품질검사 | 1건 | 소장이별도로 정함 | 2,000 |
| | | 위생상 유해여부 | 〃 | 〃 | 1,000 |
| | | 일성분의 정성분석 | 〃 | 〃 | 300 |
| | | 일성분의 정량분석 | 〃 | 〃 | 500 |
| 음식물 검사 | 음식물품기호품 | 품질검사 | 〃 | 고체 300 그람 | 2,000 |
| | | 위생상 유해여부 | 〃 | 액체 1 리터이상 | 2,000 |
| | | 일성분의 정성분석 | 〃 | 고체 200 그람 | 200 |
| | | 일성분의 정량분석 | 〃 | 액체 500리터이상 | 600 |
| | | 식품첨가물공전시험 | 〃 | 〃 | 2,000 |
| 음식물용품 검사 | 음식물용기구 | 용기검사 | 〃 | 1개 이상 | 2,000 |
| | | 일성분정성검사 | 〃 | 〃 | 300 |
| | | 일성분정량분석 | 〃 | 〃 | 500 |
| 환경위생시험 | 특수공기및오수 | 특수공기검사 | 〃 | 물1리터 이상 | 2,000 |
| | | 분뇨정화조수 | 〃 | 〃 | 1,500 |
| | | 공기일성분 정성분석 | 〃 | 〃 | 200 |
| | | 공기일성분 정량분석 | 〃 | 〃 | 400 |
| 수질조사 | 물및빙설 | 음료적부 | 〃 | 물빙설2리터이상 | 1,500 |
| | | 일성분의 정성분석 | 〃 | 물1리터 이상 | 200 |
| | | 일성분의 정량분석 | 〃 | 〃 | 500 |
| | 공업용및광천 | 공업용적부 | 〃 | 물2리터 이상 | 3,000 |
| | | 광천적부 | 〃 | 〃 | 3,000 |
| 방사능검사 | 물및음식물과의 약품 | 방사능 측정 | 〃 | 물1리터 이상 | 500 |
| 현미경학적 검사 | 배설물분비물 혈액기타액체 | 염색검정검사 | 〃 | 50그람 이상 | 100 |
| | | 특수검정검사 | 〃 | 〃 | 200 |
| 세균배양검사 | 〃 | 창내세균검사 | 〃 | 〃 | 500 |
| | | 일반세균검사 | 〃 | 〃 | 500 |
| | | 결핵균검사 | 〃 | 〃 | 500 |
| | | 세균저항력검사 | 〃 | 〃 | 500 |
| 혈청학적검사 | 혈액 | 응집반응검사 | 〃 | 5그람 이상 | 100 |
| | | 침강반응검사 | 〃 | 〃 | 100 |
| | | 보체결합반응검사 | 〃 | 〃 | 200 |
| 생물학적검사 | 배설물분비물 혈액 | 일성분의 정성시 분석 | 〃 | 50그람 이상 | 100 |
| | | 일성분의 정량분석 | 〃 | 〃 | 200 |

| 종별 | | | 건수 | 공시품분량 | 수수료 |
|---|---|---|---|---|---|
| | 동물을 요하는 시험 | 마우스 | 1건 | 매수 | 200 |
| | | 모트못트 | 〃 | 〃 | 500 |
| | | 가로 | 〃 | 〃 | 700 |
| 살균살충검사 | 살균살충제 | 살균시험 | 〃 | 소장이 별도로정함 | 1,000 |
| | | 살충시험 | 〃 | 〃 | 400 |
| 분봉 | 약품및식품류 | 분봉수수료 | 〃 | 2키로그람이상 | 300 |
| | | 분봉용기 | 〃 | 〃 | 5 |
| 기타 | | 성적서사본 | 〃 | | 50 |
| | | 번역문 | 〃 | | 100 |

비 고 : ○ 공해검사요금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징수함.
○ 이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험은 그의 유사한 시험 수수료에 준하여 소장이 정한다.
• 특수한 동물을 사용시는 그 실비를 추가할 수 있다.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도시개발의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제703호

도시개발의촉진에따른서울특별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특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의 건축활동과 도시불량지구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교통난의 해소를 위한 주차용건물의 건축을 정리함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대상 및 세목) ①영동,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여의도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원시취득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다만, 무허가건물과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에 규정한 지구내에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과세공공단체(이하건축주라 한다)가 건축한 건축물을 최초로 양수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양수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최초로 양수한자라 함은 당해 건물의 건축비 전액을 부담(자담)하고 준공후에 이를 양수하는 것을 약정으로 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



0866 2-5

2. 농지개량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연합회
4. 해운조합과 동연합회
5. 상공회의소
6. 대한적십자사
7.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
8. 농업협동조합과 동연합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차용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월내에 정당한 사용없이 고용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세면제을 받은후 당해 건물을 주차용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일시에 징수한다:

1. 1동의 건물내에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건물로서 주차장 면적이 당해 건물의 총면적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전용건물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한층의 설치한 주차장면적이 건축법·시행령에 정하는 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당해층의 총면적의 100분의 80이상인 당해층

④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소공, 무교도시재개발사업지구중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매수 또는 철거되었거나 새로히 건축된 건물을 최초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면제를 받은 자가 당해 토지를 2년내에 건축용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면제기간중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한 취득세, 재산세및 도시계획세를 일시에 징수한다.

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상건물이 있거나 기타 사용수익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무처리위임) 전조에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사무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을 관할하는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과세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 또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기간) ①제2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은 1973.12.21까지 과세원인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 2 조제 2 항중 소공, 무교도시개개발 지구에 대하여는 1976 년 12 월 31 일까지 과세원인이 발생한 것에 적용한다.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3 호

도시계획소로일부변경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산 1 번지내 도시계획소로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게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3. 노선 변경 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점 | 종점 | 비고 |
|---|---|---|---|---|---|---|---|---|
| 기정 | 소로 | 3 | 289 | 6 | 88 | 북아현동 1-1215 | 북아현동 1-876 | 폭원축소 |
| 변경 | 〃 | 4 | 243 | 4 | 88 | 〃 | 〃 | |
| 기정 | 〃 | 3 | 290 | 6 | 24 | 북아현동 1-1213 | 북아현동 1-839 | |
| 변경 | 〃 | 4 | 244 | 4 | 24 | 〃 | 〃 |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에 보관)

1972. 4. 17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고시제 48 호

하천공작물설치허가

하천공작물 설치를 하천법 제 23 조 및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고시함

다 음

| 허가년월일 | 허가장소 | 수면종류 | 공사목적 | 공작물개요 | 공사기간 | 허가받은자의 주소 성명 |
|---|---|---|---|---|---|---|
| 72. 4 | 영등포구 흑석동 97-2 앞 | 하천 (준용하천) | 복개후 통로확보 | 복개공사<br>폭 = 2.6 ~ 3.5 m<br>높이 = 2.23 m ~ 3.6 m<br>길이 = 146 m | 허가일로부터 4 개월 | 영등포구흑석동 97-2<br>주식회사중석상사 대표 양재구 |

1972. 4. 21

서 울 특 별 시 장



0867

2-7

◎서울특별시고시제51호

도시계획소로신설

1. 서울특별시관내 도시계획소로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

3. 노선 신설 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점 | 종점 | 비고 |
|---|---|---|---|---|---|---|---|---|
| 신설 | 소로 | 1 | | 10 | 610 | 용산동2가5-98 | 용산동2가5-545 |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1972. 4. 22

서 울 특 별 시 장